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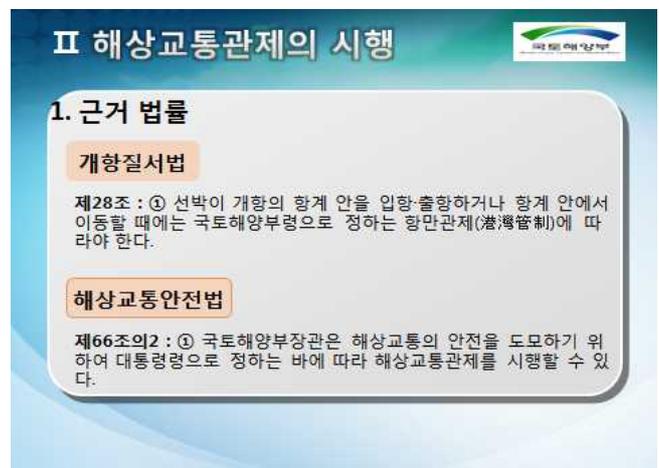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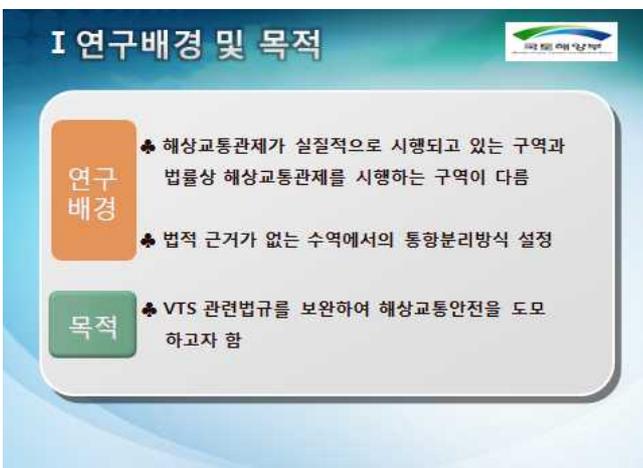
VTS 관련법규 보완의 필요성

고영신* · 이남열 · 김현성

*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

요약 :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익을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,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하지만,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.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법률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.

핵심용어 : VTS 관련법규, 법률부재, 해상교통안전법, VHF 청수의무



Ⅱ 해상교통관제의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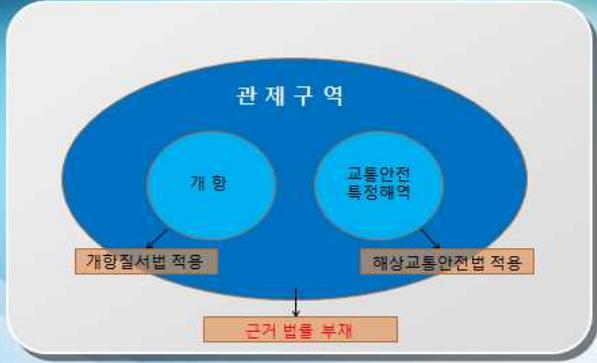


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

제13조의 2 :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"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.

1. 별표 3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(인천, 부산, 울산, 포항, 여수)
2. 제1호 외의 연안해역 중 해상교통량이 많아 관제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해역(이하 "연안해상교통관제해역"이라 한다)

Ⅱ 해상교통관제의 시행



Ⅱ 해상교통관제의 시행



2. 문제점

- ❖ 개항 밖 해역의 해상교통관제는 해상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하나,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그 해역이 한정됨. 따라서,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되는 않은 해역의 해상교통관제 시행은 법적 근거가 없음.
- ❖ 해상교통안전법 제 66조의2 2항 (VHF의 청수의무)은 해상교통관제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,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한정되어 해상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음.

Ⅱ 해상교통관제의 시행



3. 개선방안

- ❖ 실질적으로 관제구역으로 설정되어 해상교통관제가 시행되고 있는 해역을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 마련.
- ❖ 항만의 특성(교통량, 선박의 종류등)을 고려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추가 설정.

Ⅲ 통항분리방식의 설정



1. 정의

- ❖ 통항분리방식(通航分離方式)이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(通航路)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❖ 통항로(通航路)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(水域)을 말한다.

Ⅲ 통항분리방식의 설정



2. 근거 법률

해상교통안전법

제30조: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수역(이하 "통항분리수역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하여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
 국제해사기구에서 발행하는 "SHIPS ROUTING"상 국내에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은 인천, 여수, 완도 임

Ⅲ 통항분리방식의 설정



2.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아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방식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수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

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

제4조의2(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)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라 함은 [별표7](#) 과 같다.

Ⅲ 통항분리방식의 설정



마산항로, 통영항로, 진해항로

- 마산관제권역내 항로(마산, 통영, 진해항로)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(좁은수로등 항로의지정)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로이다.

하지만 마산청고시 2010-27호 제3조에 의하면 모든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 30조(통항분리방식)제2항 내지 11항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.

Ⅲ 통항분리방식의 설정



Ⅲ 통항분리방식의 설정



Ⅲ 통항분리방식의 설정



2. 문제점 및 개선방안

문제점

- ❖ 가덕수로, 마산항로, 진해항로, 통영항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에 의하여 지정된 항로지만, 실질적으로는 [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통항분리방식](#)을 적용하고 있음
- ❖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(좁은수로등에서의 항로지정등)는 동법 [제29조의\(좁은수로\)](#) 항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
- ❖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에서의 항법과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법은 일치하지 않음

Ⅲ 통항분리방식의 설정



개선방안

- ❖ 가덕수로, 마산항로, 진해항로, 통영항로에서는 실질적으로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어왔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(제4조의 2)에 포함.
- ❖ 시행령 14조2항 (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)에 추가하여 지방청고시로 통항분리방식지정.
- ❖ 서로 다른 항법이 중첩되어 적용되지 않도록 '항법의 우선순위' 조항을 신설.

* 고영신 maximus98@korea.kr